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7
----------	-----

2011년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6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따라 시설을 재정비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조례 제3조 별표(사회복지시설) 관련 재정비사항으로는
 - 다시함께센터, 여울쉼터, 너른쉼터 등 20개소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 시립노인요양원, 시립양로원, 시립중계노인복지관 등 3개소 시설의 명칭 및 주요기능을 변경하였고,
 - 시립엘림노인요양원과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을 증·개축하여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으로 통합하였으며,

-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주요기능을 변경하였고,
- 시립보육정보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2개소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음.

- 또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국'을 '복지건강본부'로, '청소년담당관'을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을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3.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총괄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재정비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하려는 것임.

□ 세부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재정비함에 있어, 그간 누락 및 신설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별표에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이용에 기여하고, 운영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시함께센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외 19개 시설의 명칭 및 기능을 신설하였음.
- 시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요기능 전환 후 시설명이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현재의 시설 기능에 부합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된 주요기능을 변경 함.
이들테면, 현행 조례에서 양로시설의 주요기능은 '보호 대상 저소득 노인 수용보호'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저소득 노인보호'로 변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거리감을 조장하여 시설이용에 낙인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들을 삭제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임.

-서울시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센터"는 서울 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2조 제1항1)에 의해,
현행 조례의 별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고,
"서울시 보육정보센터"는 수행기능 검토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 시 조직개편(2010. 9. 27일자)으로 본부 · 국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복지국'을 '복지건강본부'로,
'청소년담당관'을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을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로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함.

-다만, 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에 따른 조례개정을 미루어온 바,
앞으로는 현실성 있고,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어투 표현 등을 한글에 맞도록 정비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와 현장에서 사용되는 실제 사회복지기관 명칭 및 그
기능이 다름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임.
그러나 조직개편의 경우에도 이미 수 개월 전에 이루어진바,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 답변 : 앞으로는 보다 시의적절하게 조치하겠음.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2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의 보호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센터"라 한
다)를 설치한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및 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및 62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1.5.6~2011.5.26)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로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로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은 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과 노숙인이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제3조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부랑인(여) 수용보호
	◦ 시립영보자애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
	◦ 다시함께센터	동작구 대방동 345-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어울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여성 수용보호
	◦ 너른쉼터	비공개	"
	◦ 서울이주여성상담터	금천구 시흥4동 산139-2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구로4동 98-5번지 2,3층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장안동 329-1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은평구 응암동 42-5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정동1278-1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동 317-23	저소득 노인보호
	◦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상계동 산 51	"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홍익동 16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요양보호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성산동 373-1	"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삼전동 172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저소득 노인 요양보호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 군포 산본동 1100	"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중계동 501-1	"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망우동235-1	"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명일동 48-10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수유동 122-3	"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등촌동 661-4	"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봉천동 726-3	"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동 364-16	"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구로동 25-1	"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동 558-1	"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하계동 170-1	"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쌍문동 19-12	"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대방동 335-10	"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창전동 140	"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천연동 117-3	"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경운동 90-3외1	"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장동 798-1	"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동 66-25	"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한남동 108-1	"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	"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면목동 178-8	"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동 317-24	"
	◦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79	"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 시립곰두리체육센터 ◦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시립평화로운집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보호센터 ◦ 시립중랑장애인 단기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원구 상계동 771 노원구 상계동 771 노원구 상계동 771 송파구 오금동 51 동작구 신대방동 395 서대문구 남카좌동 270-1 양천구 목동 908-33 은평구 구산동 산61-8 서대문구 홍은동 304-1 송파구 마천동 28-1 서대문구 홍은동 415-94 중랑구 망우동 479-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적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 중증장애인 보호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
복지건강본부 (지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은평의마을 ◦ 양평쉼터 ◦ 게스트하우스 ◦ 비전트레이닝센터 ◦ 영등포보현의집 ◦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 브릿지 상담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평구 구산동 산61-8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347-1 성동구 송정동 73-5 성동구 용답동 250-1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31 용산구 갈월동 14-30 서대문구 합동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랑인(남) 보호 노숙인 보호 및 재활지원 " " "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 시립은혜로운집 ◦ 누리봄 ◦ 새오름터 ◦ 늘푸른집 ◦ 동작아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은평구 구산동 산61-8 광진구 중곡동 29-10 은평구 대조동 220-1 도봉구 도봉1동 613-40 동작구 상도동 29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 보호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시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u>그</u>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 제1호의 <u>규정에 의한</u>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u>노인·장애인·아동복지</u>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p>	<p>1. "사회복지시설"이란 「<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제1호에 <u>따라</u>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u>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u>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p>
<p>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라 함은 「<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u>의하여</u>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p>	<p>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란 「<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u>따라</u>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p>
<p>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u>의하여</u>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u>따라</u>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p>
<p>제4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p>	<p>제4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p>

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은 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 및 노숙인이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은 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과 노숙인이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제3조관련)				[별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제3조관련)			
주관국 (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주관국 (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 족정책 관(여성 정책담 당관)	◦ 여성보호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부랑인(여) 수용보호	여성가 족정책 관(여성 정책담 당관)	◦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부랑인(여) 수용보호
	◦ 시립영보자애원	경기 용인시 처안구 이동면 묵리 464	"		◦ 시립영보자애원	경기 용인시 처안구 이동면 묵리 464	"
			〈신 설〉		◦ 다시함께센터	동작구 대방동 345-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신 설〉		◦ 여울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 여성수용 보호
			〈신 설〉		◦ 너른쉼터	비공개	"
			〈신 설〉	◦ 서울이주여성 더딤터	금천구 시흥4동 산139-2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신 설〉	◦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등	
			〈신 설〉	여성가족 정책관 (저출산 대책 담당관)	◦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구로4동 98-5번지 2,3층	한부모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여성가 족정책 관(보육 담당관)	◦ 시립보육정보센터	중구 서소문동 5-1외	보육관련 정보 제공		〈삭 제〉		
여성가 족정책 관(청소 년담담 관)	◦ 시립아동상담치료 센터	동대문구 장안동 329-1	보호대상아동 상담·치료· 보호	여성가 족정책 관(아동 청소년 담담관)	◦ 시립아동상담치료 센터	동대문구 장안동 329-1	보호대상아동 상담·치료· 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은평구 응암동 42-5	보호대상아동 양육 및 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은평구 응암동 42-5	보호대상아동 양육 및 보호
	◦ 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보호대상아동 상담·치료· 일시보호		〈삭 제〉		

현행				개정안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정동 1278-1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정동 1278-1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국 (노인복지과)	○ <u>시립노인요양원</u>	노원구 상계동 산 51	<u>보호대상 저소득 노인 수용보호</u>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 <u>시립수락양로원</u>	노원구 상계동 산 51	<u>저소득 노인 보호</u>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삼전동 172	"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삼전동 172	<u>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저소득 노인 요양 보호</u>
	○ <u>시립양로원</u>	강동구 고덕동 317-23	"		○ <u>시립고덕양로원</u>	강동구 고덕동 317-23	<u>저소득 노인 보호</u>
	○ <u>시립엘립노인요양원</u>	경기 군포 산본동 1100	"		○ <u>시립엘립노인전문요양원</u>	경기 군포 산본동 1100	<u>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저소득 노인 요양 보호</u>
	○ <u>시립엘립노인전문요양원</u>	<u>경기 군포 산본동 1100</u>	"		<u><삭 제></u>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목리 464	"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목리 464	<u>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저소득 노인 요양 보호</u>
	○ <u>시립중계노인복지관</u>	노원구 중계동 501-1	"		○ <u>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u>	노원구 중계동 501-1	"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망우동 235-1	"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망우동 235-1	"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홍익동 16	<u>치매·중풍 노인전문 요양보호 (실비부담)</u>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홍익동 16	<u>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요양 보호</u>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성산동 373-1	"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성산동 373-1	"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명일동 48-10	<u>노인들에 대한 취미·여가·건강 관리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u>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명일동 48-10	<u>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u>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수유동 122-3	"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수유동 122-3	"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등촌동 661-4	"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등촌동 661-4	"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봉천동 726-3	"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봉천동 726-3	"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동 364-16	"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동 364-16	"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구로동 25-1	"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구로동 25-1	"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동 558-1	"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동 558-1	"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하계동 170-1	"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하계동 170-1	"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쌍문동 19-12	"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쌍문동 19-12	"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		

현	행	개 정 안					
---	---	-------	--	--	--	--	--

주관국 (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주관국 (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국 (노인 복지과)	◦ 시립동작노인종합 복지관	동작구 대방동 335-10	노인들에 대한 취미· 여가·건강관 리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진 강본부 (노인 복지과)	◦ 시립동작노인종합 복지관	동작구 대방동 335-10	노인복지 프 로그램 운영
	◦ 시립마포노인종합 복지관	마포구 창전동 140	"		◦ 시립마포노인종합 복지관	마포구 창전동 140	"
	◦ 시립서대문노인종합 복지관	서대문구 천연동 117-3	"		◦ 시립서대문노인종합 복지관	서대문구 천연동 117-3	"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경운동 90-3외 1	"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경운동 90-3외 1	"
	◦ 시립성동노인종합 복지관	성동구 마장동 798-1	"		◦ 시립성동노인종합 복지관	성동구 마장동 798-1	"
	◦ 시립성북노인종합 복지관	성북구 종암동 66-25	"		◦ 시립성북노인종합 복지관	성북구 종암동 66-25	"
	◦ 시립용산노인종합 복지관	용산구 한남동 108-1	"		◦ 시립용산노인종합 복지관	용산구 한남동 108-1	"
	◦ 시립은평노인종합 복지관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	"		◦ 시립은평노인종합 복지관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	"
◦ 시립중랑노인종합 복지관	중랑구 면목동 178-8	"	◦ 시립중랑노인종합 복지관	중랑구 면목동 178-8	"		
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 시립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진 강본부 (장애인 복지과)	◦ 시립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		◦ 시립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
	◦ 시립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동 317-24	"		◦ 시립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동 317-24	"
	◦ 시립영등포장애인 종합복지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79	"		◦ 시립영등포장애인 종합복지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79	"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상이군경복지프 로그램 운영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상이군경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시각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		◦ 시립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시각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
	◦ 시립뇌성마비종합 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 시립뇌성마비종합 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동 51	장애인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동 51	장애인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시립지적장애인 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지적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지적장애인 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지적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서대문농아인 복지관	서대문구남가좌 동 270-1	농아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서대문농아인 복지관	서대문구 남가좌동 270-1	농아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양천구 목동 908-33	장애인생산품 판매		◦ 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양천구 목동 908-33	장애인생산품 판매
◦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구산동 산61-8	중증장애인 보호	◦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구산동 산61-8	중증장애인 보호		